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

일반인 (적용대상 아님)

- 친구, 가족, 연인 등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
-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
-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

금액 제한없이 제공가능

> 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

-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상급 교직원이 하급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동창회·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

100만원 이하 제공가능

직무 관련 없음

- 친구,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
 주는 선물
-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직장 동료 교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

5만원 이하 제공가능 **직무 관련** (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이 <mark>인정됨</mark>)

-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
- 각종 간담회,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
- 하급 교직원이 상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

제공 불가 **직무 관련** (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이 <mark>인정안됨</mark>)

- ●상시적으로 평가·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(학부모)이 드리는 선물
- 입찰, 계약,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 에게 제공하는 선물
- 인사·평가,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 에게 제공하는 선물





국민권익위원회 www.acrc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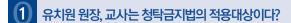
국민신물교 www.epeople.go.kr 국민쿻 110



국민권익위원회









A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도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소속 원장, 교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.

2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?



- A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.
 - ※ 공무수행사인은 '공무수행에 관하여'만 청탁금지법(부정청탁, 금품등 수수 금지)이 적용됩니다.
- 생일날 등의 기념일에 원생끼리 과자나 선물을 주고 받아도 된다?



- A 유치원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생 끼리 선물을 주고 받아도 됩니다.
- 4 유치원 운동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주는 식사나 다과를 받아도 된다?



- A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식사나 다과를 받아도 됩니다.
 - ※ 학부모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참석한 학부모 모두에게 주는 식사나 다과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- 유치원 원장·교사는 현장학습, 체험학습을 가는 날 학부모에게 교사용 도시락, 다과 등을 요구 해서는 안된다?



A 유치원 원장·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 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원생들(학부모)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?



- A 원생들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 - ※ 원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- 7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,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도 된다?



-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- 원생(학부모)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?



- A 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드려도 됩니다.
- 9 다른 유치원으로 옮긴 담임교사에게 이전 학교의 원생(학부모)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?



- A 다른 유치원으로 옮긴 담임교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(100만원 이하)을 드려도 됩니다.
- 유치원 졸업식날 원생들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?



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
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

선물의 상담

●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

※ 가액, 사교·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

선물의 신고

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

※ 국민권익위원회,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

선물의 반환 · 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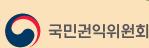
-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
-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
 - ※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

조사 및 조치

- 위반 여부 조사
-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
- 징계, 과태료 부과 통보









국민권익위원회 www.acrc.go.kr









Α



- 1 유치원 원장,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?
 -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도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소속 원장, 교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(2) 담임교사가 원생의 생일을 맞이하여 원생들에게 음료수와 과자를 줘도 된다?
- A 유치원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생에게 선물을 줘도 됩니다.
- 당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케익,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?
-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.
- 원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현장학습,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?
- A 원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원생의 지도·인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장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 - ※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무료 입장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.
- 만4세반 원생(학부모)이 작년의 만3세반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?
- A 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.

- 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원생들(학부모)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?
- X
- A 원생들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 - ※ 원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- 상급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하급 교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1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아도 된다?



- A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전별금을 받아서는 아됩니다.
 - ※ 다만,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.
- 유치원 원장·교사는 현장학습, 체험학습을 가는 날 학부모에게 교사용 도시락, 다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?



- A 유치원 원장·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- 종료 교직원이 주는 자녀 돌반지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?



- A 동료 교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받아도 됩니다.
- 10 유치원 졸업식날 담임교사는 원생들(학부모)로 부터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된다?
- 졸업식날 담임교사가 원생들(학부모)이 제공하는 꽃다발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